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정지권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407호

다. 제출일자 : 2020. 4. 3.

라. 회부일자 : 2020. 4. 8.

2. 제안사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에 명기된 자전거 구매시에는 자치구 등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따른 행정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실질적인 자전거 등록이 전무한 실정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한 자전거주차장(24개소)과 자전거거치대(5209개)의 유지·관리가 부실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자전거거치대에 장기간 보관된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한 폐기 자체가 어려운게 현실임. 이에따라 시장과 구청장의 책무에 자전거 등록에 대하여 명기하고 자전거주차장과 거치대는 년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하여 자전거주차장과 거치대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

3.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안 제3조제7항)
- 나. 자전거주차장 설치 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안 제8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3 ~ 2020. 4. 21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원안동의
 - 본 조례개정안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명기하고,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따라야 하고

- 자전거주차장 설치 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함을 규정
- 장기 무단 방치자전거 문제 해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연 1회 이상 자전거이용시설의 점검 또한 기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주차장치 등의 자전거이용시설 점검 및 보수 주기를 ‘년 1회 이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과 자전거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지정된 방식¹⁾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전거 절도 문제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및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0년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계획’²⁾을 통해 자치구와 함께 방치자전거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방치 자전거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3개 자치구(강동구, 양천구, 노원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개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 [2020년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계획] 자전거정책과-2760(2020.3.4.)

정을 통해 자전거 등록 등과 관련한 시장의 노력의무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내 자전거 방치문제 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됨

〈자치구별 자전거 등록제 운영현황〉

(2020.4 기준)

연번	자치구명	시행년도	등록 자전거 대수	등록 방식	표시방식	소요예산
1	강동구	2014	223	수기	스티커	비예산
2	양천구	2008	36,721	수기	스티커	비예산
3	노원구	2013	37,116	모바일 앱	스티커	3,600천원 (유지관리비)

○ 한편,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권한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³⁾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시장이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⁴⁾의 시장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가 자전거주차장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⁵⁾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서울시 자전거 주차시설] (2019. 12월 기준): 자치구별 자전거 거치대(4,993개소)+기타 기관별 거치대(216개소)+자전거 주차장(24개소)+자전거 보관함(11개소)=전체 5,244개소

	총 계	일반거치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함
지점(개소)	5,244	5,209	24	11
거치대수(대)	145,384	139,550	5,574	260